

# 쌍문동 행복주택건설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의안 번호	841
----------	-----

제출년월일 : 2015년 10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쌍문동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생활 출발선에 있는 2030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서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여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주택정책과 서민 주거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음
- 나. 도봉구 쌍문동 일대는 도봉산을 연접한 양호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주거시설의 노후도가 높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과 지역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바, 행복주택 건설을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주거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주민 공동의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하여 지역 전체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임
- 다. 아울러 당해 사업은 가용토지의 확보가 어려운 서울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하여 타 지자체가 소유한 유휴지를 최소의 비용으로 임차하여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쌍문동 행복주택건설사업
-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43-3
- 다. 면 적 : 23,154 $m^2$ (향후 분할예정, 경기도시공사지분 18,296 $m^2$ )
- 라. 사업방안 : 경기도시공사 소유부지를 임대하여 행복주택사업 시행
- 마. 도시계획사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부지내 일부 비오톱1등급
- 바. 기관별 업무추진 내용
  - 사업승인권자 : 서울특별시
  -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SH공사
- 사. 건설기간 총 사업비 : 493억원
  - 용지비 : 7억원(토지임차료)
  - 조성비 : 15억원(흙막이공사비)
  - 건축비 : 471억원(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포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나. 쌍문동 행복주택건설사업 신규사업 추진(안) 1부.
- 다. 쌍문동 행복주택사업 투자타당성 분석보고서 1부.

※ 작성자 : 서울특별시 SH공사(기획경영본부 사업기획팀)

팀장 송순기(☎3410-7083)/ 담당 채민석(☎3410-7084)